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심혈관질환 정의 구체화 및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조항 정비 등 〉
■ 김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084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은호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5
1. 심혈관질환 정의 및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구체화 등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안 제4조의2 신설)	5
2.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조항 정비,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 구축 등 (안 제13조, 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신설, 안 제16조) ...	11
3. 부칙	19
4. 관계기관 의견	20

I. 개요

1. 김윤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6084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윤의원 등 20인

(2) 제 안 일 : 2026. 1. 15.

(3) 회 부 일 : 2026. 1. 16.

나.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진료·재활·연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증·난치성 심장질환에 관한 의료보장은 취약하고 심장질환 전문인력 및 인프라도 부족한 상황임. 또한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의 경우 전문 치료기관의 지역별 격차로 인해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음.

이에 심장질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증·난치성 심장질환’의 개념을 신설하여 국가 책임과 지원 근거를 분명히 했음. 또한, 국가가 중증·난치성 심장질환 환자의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의 심장질환 전문 중환자실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 의료기관 및 대학의 전문 의료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음. 아울러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의 개념과 소아심장거점병원 지정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심장질환 환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가. 심근경색, 심부전, 부정맥, 심장판막증, 심근염, 폐고혈압이 심혈관 질환임을 명시하고 심뇌혈관질환의 범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을 추가함(안 제2조제1호가목, 제2조제1호사목 신설).
- 나. “중증·난치성 심장질환”을 치료가 어렵고 재발 위험이 높아 환자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장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장질환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 신설).
- 다.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이란 출생 직후 또는 소아기에 조기 치료가 이루어질 경우 치료 효과가 현저한 심실대혈관연결불일치, 팔로네징후 등의 선천성 심장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장질환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5호 신설).
- 라. “진료권”이란 효율적인 의료자원 관리를 위하여 의료이용 및 의료자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행정구역 또는 그 묶음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6호 신설).
-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증·난치성 심장질환 환자의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 바. 종합계획 수립 시 진료권 중심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 구축, 기반시설 확충 및 진료체계 개선,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에 관한 사항,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 진료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 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종합계획 추진 실적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 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 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시 진료권별로 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을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중심 진료 및 조기재활로 명확히 함(안 제13조제1항).
- 차.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시 진료권별로 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을 중등증·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중심 진료 및 조기재활로 명확히 하며 만성 심뇌혈관질환자의 지속 사후관리를 추가함(안 제13조의2 신설).
- 카. 심뇌혈관질환 관련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역완결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내에 심뇌혈관 보건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3조의3 신설).
- 타.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자에게 지역별로 전문적 진료를 적절히 제공하기 위해 소아심장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4 신설).
-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심뇌혈관질환 관련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16조).
- 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의 심장질환 전문 중환자실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 의료기관 및 대학의 전문 의료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 및 중증·난치성 심장질환 환자의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6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신설 등).

라.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51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¹⁾.

1)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필수의료법안”）」(의안번호 제15121호)은 2026년 2월 12일 본회의 의결(원안 가결)됨.

동 개정안이 「필수의료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 주요 이유는, 「필수의료법안」에서 신설되는 “필수의료”·“진료권” 및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필수의료법안」안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10조)의 용어 및 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임.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심혈관질환 정의 및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구체화 등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안 제4조의2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심혈관질환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진료권 및 심장질환과 관련된 정의 규정을 신설하며(안 제2조), 국가 등의 중증·난치성 심장질환 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의무를 규정하고(안 제3조),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심장질환과 관련된 사항 등을 추가하며(안 제4조), 동 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성과를 공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4조의2).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심뇌혈관질환”이란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1. ----- ----- -----.
가. <u>심근경색</u> 등 심혈관질환	가. <u>심근경색, 심부전, 부정맥, 심장판막증, 심근염, 폐고혈압</u> 등 -----
나. ~ 바. (생략)	나. ~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2. · 3. (생 략)

<신 설>

<신 설>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사.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2. · 3. (현행과 같음)

4. “중증 · 난치성 심장질환”이란
치료가 어렵고 재발 위험이 높
아 환자의 생명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치는 심장질환으로서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장질환
을 말한다.

5.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이란
출생 직후 또는 소아기에 조기
치료가 이루어질 경우 치료 효
과가 현저한 심실대혈관연결불
일치, 팔로네징후 등의 선천성
심장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심장질환을 말한다.

6. “진료권”이란 효율적인 의료자
원 관리를 위하여 의료이용 및
의료자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 고시하
는 행정구역 또는 그 묶음을 말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
· 난치성 심장질환 환자의 의료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4조(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략)

<신설>

6. (생략)

③ ~ ⑥ (생략)

<신설>

제4조(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5. (현행과 같음)

6. 진료권 중심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중증·난치성 심장질환 치료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진료체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8. 중증·난치성 심장질환 환자의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에 관한 사항

9.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의 진료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10. (현행 제6호와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종합계획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 실적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공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절차, 방법 및 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첫째, 개정안은 심뇌혈관질환 중 심혈관질환의 정의에 기존의 ‘심근경색’ 외에도 ‘심부전·부정맥·심장판막증·심근염·폐고혈압’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중증·난치성 및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이들 심장질환이 심뇌혈관질환에 포함됨을 명시함(안 제2조).

이는 다양한 세부 심장질환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심뇌혈관질환법”)」상의 심뇌혈관질환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것임.

다만, 이들 심장질환은 개정안과 같이 별도의 정의 규정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심뇌혈관질환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현행 「심뇌혈관질환법」 제2조제1호에서 심뇌혈관질환의 예를 비교적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뇌혈관질환”이란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가.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

나. 심장정지

다.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라. 고혈압

마. 당뇨병

바. 이상지질혈증

사. 삭제 <2022. 6. 10.>

□ 둘째, 개정안은 국가 등의 중증·난치성 심장질환 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의무를 규정하고(안 제3조제2호 신설), 중증·난치성 및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 관련 사항을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4조, 안 제4조의2 신설).

이는 중증·난치성 및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 환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중증·난치성 및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을 종합계획에 포함하는 것은 체계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현행법 제4조제2항제6호2)에 따라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계획에 포함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도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한편, 개정안은 심뇌혈관지원센터 등에 대한 비용 지원에 있어 안 제4조의2에 따른 종합계획의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안 제16조제2항 신설3), 종합계획의 평가 및 그 결과의 비용 지원 반영과 관련하여서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26조4)와 같은 입법례가 있음.

-
- 2)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3)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16조(비용의 지원)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시 제4조의2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 4)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참고로, 심뇌혈관질환에 뇌동맥류, 심부전, 부정맥, 판막질환이 포함되는 것을 명시하는 내용 등(안 제2조제1호)을 포함한 「심뇌혈관질환법」 개정안이 발의(안상훈의원 대표발의, 제16209호, 발의일 2026. 1. 21.)되어 있으므로, 동 법안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음.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주기, 절차 및 방법, 평가 결과의 공개 범위 및 공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국고 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제16조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과 다르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물순환 촉진사업에 필요한 비용
2. 물순환 촉진사업을 위한 토지·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물순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국가는 제13조에 따른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1항에 따른 국고 보조를 중단 또는 삭감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조항 정비, 심뇌혈관질환 진료 협력체계 구축 등(안 제13조, 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 까지 신설, 안 제16조)

가. 개정안의 내용

□ 현행 제13조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이하 “권역센터”)와 지역심뇌혈관
질환센터(이하 “지역센터”)의 사업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분리하여 권역센터에 관한 규정
(안 제13조)과 지역센터에 관한 규정(안 제13조의2 신설)을 별도로 둡니다.

- 권역센터는 중증·응급 및 권역 내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사업을,
지역센터는 중등증·응급 및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사업과
만성 심뇌혈관질환자의 지속 사후관리 사업을 담당하도록 함.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수의료법」 제10조에 따른 필수의
료 진료협력체계 내에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3조의3 신설), 소아심장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4 신설).

또한, 심뇌혈관질환센터가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사업을 수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16조).

<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

안 제10조(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는 필수의료를 지역완결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진료권별로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⑥ (생략)

현행	개정안
제13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① ----- ----- ----- -----진료권별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 -----.
1. <u>중증 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중 심 진료 및 조기재활</u>	1. <u>중증 · 응급</u> ----- -----
2. <u>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관련 예방, 진료 및 재활 등에 대한 조사 · 연구</u>	2. <u>권역 내</u> ----- ----- -----
3. <u>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 · 분석 및 제공</u>	3. <u>권역 내</u> ----- ----- -----
4. <u>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u>	4. <u>권역 내</u> -----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3년마다 <u>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u> 재지정할 수 있다.	③ -----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로-----.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u>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u>	④ -----권역심뇌 혈관질환센터가-----

환센터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 4. (생략)

⑥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재지정의 기준·방법·절차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

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

1. ~ 4. (현행과 같음)

⑥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

제13조의2(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및 같은 법 제3조의5에 따른 전문병원 중에서 진료권별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중등증·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중심 진료 및 조기재활

2.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관련 예방, 진료 및 재활 등에 관한 연구, 통계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및 제공

<신 설>

3. 만성 심뇌혈관질환자의 지속 사후관리

4.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지역심뇌혈관질환관리센터의 평가·재지정·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은 제1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본다.

제13조의3(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 구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 관련 보건의료서비스를 진료권 내에서 지역완결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에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운영 기준에 따르되,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진료를 제

	<u>공하는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구성한다.</u> <u>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u>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u>제13조의4(소아심장거점병원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자에게 지역별로 전문진료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도록 소아심장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u> <u>② 소아심장거점병원의 지정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제16조(비용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심뇌혈관질환센터가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확충하는데 드는 비용 2. ~ 5. (생략)	제16조(비용의 지원) ① ----- ----- -----지 <u>원하여야 한다.</u> 1.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 ----- ----- 2.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u>6.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u>
	<u>심장질환 전문 중환자실 설치</u>
	<u>및 운영에 드는 비용</u>
<u><신 설></u>	<u>7.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u>
	<u>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u>
	<u>의 전문의, 간호사 등 심뇌혈관</u>
	<u>질환 관리에 필요한 전문 의료</u>
	<u>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u>
<u><신 설></u>	<u>8. 중증·난치성 심장질환 환자의</u>
	<u>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u>
	<u>사업에 드는 비용</u>
<u><신 설></u>	<u>9.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의 진료</u>
	<u>체계 개선에 드는 비용</u>
<u><신 설></u>	<u>10. 소아심장거점병원의 설치 및</u>
	<u>운영에 드는 비용</u>
<u><신 설></u>	<u>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u>
	<u>른 비용지원시 제4조의2에 따른</u>
	<u>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u>

나. 검토의견

□ 첫째, 개정안(안 제13조, 안 제13조의2 신설)은 진료권별로 권역·지역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필수의료법」과의 정합성을 분명히 하고, 권역센터와 지역센터의 사업을 각각 중증·응급 및 권역 내, 중등증·응급 및 지역 내 소관 사업으로 명시함으로써 각 센터의 역할이 체계적으로 구분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지역센터의 사업에 ‘만성 심뇌혈관질환자의 지속 사후관리’를 추가하였는데(안 제13조의2제3호 신설), 예방·치료 중심의 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표적인 심뇌혈관질환으로 일컬어지는 고혈압·고콜레스테롤혈증·당뇨병 등의 유병률⁵⁾이 높은 편임을 감안할 때, 해당 사업의 추가는 만성 심뇌혈관질환자 규모의 추산과 해당자 관리를 위한 인력·소요비용의 검토 등을 거쳐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임.

□ 둘째, 개정안에서는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의 구축·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데(안 제13조의3 신설),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는 「필수의료법」 제10조에 따른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의 일환으로 구축(안 제13조의3제1항 신설)되는 것이므로, 개정안 심사 에 있어서는 심뇌혈관질환이 「필수의료법」 제2조제1호6)에 따른

5) 유병률(2023년 기준): 고혈압 20.0%, 고콜레스테롤혈증 20.9%, 당뇨병 9.4%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웹사이트-결과-주제별 통계-만성 질환, <<https://knhanes.kdca.go.kr/knhanes/mntpcstat/chrnDissStat.do>>)

6)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분야로서 그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필수의료’ 분야에 포함되는 것의 적절성이 함께 논의되어야 함.

또한,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13조의3제3항 신설).

그런데, 「필수의료법」 제10조제6항⁷⁾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에 참여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진료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진료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지원을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체계상 정합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개정안은 심뇌혈관질환센터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며,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도 확대함(안 제16조).

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수행 비용의 의무적 지원 및 지원대상 사업 범위의 확대는 개정안에 의하여 발생하는 인력 및 소요비용의 추계를 선행한 뒤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임.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제10조(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 등) ⑥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진료협력체계에 참여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부칙

가. 검토의견

□ 첫째,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전제로 하고 있는 「필수의료법안」이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⁸⁾”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필수의료법안」에서 신설되는 “필수의료”·“진료권” 및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의 용어 및 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시행일은 「필수의료법안」의 시행일을 고려한 날짜로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둘째, 개정안은 지역센터의 지정에 관한 조항을 신설(안 제13조의2 신설)하고자 하므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센터는 개정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부칙에서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음.

□ 셋째, 비용 지원(안 제16조)의 경우 구체적인 적용 시점 등에 관한 적용례를 두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8) 다만,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관련 규정(안 제25조부터 제32조까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4. 관계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안 제2조부터 제4조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질환의 범위를 법률에 나열하는 것보다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개정안에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심장질환은 현행 법에 의한 사업 범위에 포함되거나 「희귀질환관리법」의 적용대상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수용이 어려움.

- 다만, 구체적인 질환의 범위를 시행규칙에 규정하기 위한 위임조항(안 제2조제1호사목 신설)의 필요성은 수용

종합계획 평가 결과를 반영한 비용 지원(안 제4조의2)과 관련하여서는, 「암관리법」 및 「희귀질환관리법」 등에 이와 같은 내용이 없다는 사실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심뇌혈관질환센터는 응급 심뇌혈관질환의 치료, 재활 및 예방관리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만성 심뇌혈관질환자의 사후관리까지 담당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또한, 소아심장거점병원을 지정하는 것보다 전반적인 소아 전문진료 병원의 확충 차원으로 별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정 질환에 대해서만 거점병원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안 제16조와 관련하여서는,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비용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점 및 타 입법례(「암관리법」 제46조⁹⁾, 「희귀질환관리법」 제20조¹⁰⁾ 등)를 감안하여 현행과 같이 재량적 비용 지원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 대상 사업범위의 확대(안 제16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는 수용이 어려움.

9) 「**암관리법**」 제46조(비용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하 생략)

10) 「**희귀질환관리법**」 제20조(비용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기획예산처) 심뇌혈관질환 관련 사업에 대한 의무지원은 전반적인 보건의료 지원체계 내의 정합성, 타 질환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안 제16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 사업들의 정의·범위가 불명확하여 재정소요 추계도 곤란하므로 안 제16조는 현행 유지 필요

□ (대한뇌졸중학회) 심혈관질환의 정의와 관련하여서는, 세부 질환은 시행규칙에 두는 것이 적절함. 개정안과 같이 세부 심장질환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거나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려는 것은, 타 분야 질환 간의 형평성 및 「희귀질환관리법」과의 중복 정책 여부 등을 감안하여 심뇌혈관질환 전체 관점에서 논의하여야 함.

안 제16조제6호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심장질환 전문 중환자실 및 뇌졸중집중치료실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으로 수정 필요

문 의 처
02)6788-5509